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1.

발 의 자 : 김용만 · 이인영 · 강준현
이훈기 · 전현희 · 박성준
이강일 · 남인순 · 양부남
한민수 · 전은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.

그런데 김구·이봉창·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에 따라 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국가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실시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책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, 국립묘지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에 공원으로 이용되던 시설이 국립묘지로 지정될 경우 일상적인 이용에 제한이 발생함.

이에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,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며, 국립묘지시설 사업 계획 수립 시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신설 등).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국립묘지를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국립효창독립공원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국립신암선열공원”을 “국립신암선열공원 및 국립효창독립공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국립묘지시설 설치 지역 또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</u> <u>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</u> <u>거나 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</u> <u>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</u> <u>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시책</u> <u>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국가는 국립묘지를 설치할</u> <u>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</u> <u>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제3조(국립묘지의 종류) ① 국립 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. 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	제3조(국립묘지의 종류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9. 국립효창독립공원</u>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. 다만,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4. (생 략) 5. <u>국립신암선열공원</u> : 「독립유	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국립신암선열공원 및 국립효</u>

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 ~ ⑦ (생략) 제11조의2(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) ① (생략)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③ ~ ⑨ (생략)	<u>창독립공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제11조의2(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5의2. 국립묘지시설 설치 지역</u> <u>또는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</u> 6. (현행과 같음) ③ ~ ⑨ (현행과 같음)
---	--